

한시 생계지원사업 개요

□ (추진배경)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'한시 생계지원' 사업 추진

□ 지원개요

○ (대상) 소득감소로 인해 위기가 발생하였으나,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

* 가구 기준 : '21.3.1 주민등록 가구(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)

< 중복대상 사업 >

▶ 복지급여: 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 긴급복지(생계지원) 수급가구

▶ 2021년 재난지원금

(고용부)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,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, (중기부) 버팀목플러스자금, 소득안정지원자금, (농식품부) 피해농업인지원, (해수부) 피해어업인지원, (산림청) 피해임업인지원, (국토부)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

※ (농어임업인 경영지원)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(30만 원) 사업도 중복대상에 포함 / 한시 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(20만 원) 지급 가능

○ 소득·재산 기준

< 지원 기준 > (세전 기준)

①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
(단위 : 원/월)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기준 중위소득 100%	1,827,831	3,088,079	3,983,950	4,876,290	5,757,373	6,628,603
기준 중위소득 75%	1,370,873	2,316,059	2,987,963	3,657,218	4,318,030	4,971,452

② 재산 기준 : 대도시 6억 원, 중소도시 3.5억 원, 농어촌 3억 원 이하

* (대도시) 특별시·광역시 / (중소도시) 도의 시(세종시 포함) / (농어촌) 도의 군

○ (지원내용) 가구별 50만 원 현금 지급(가구원 수 무관)

* 소규모 농가·어가·임가 바우처(30만원)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(20만원) 지급

□ 사업 추진 절차

